

행정자치부

시정요구

제 목 하수관로 준설토 처리 부적정

기 관 명 경상남도

관 계 기 관 사천시

내 용

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는 건설폐기물¹⁸⁷⁾에 대한 정의가 있고,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하며

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.

사천시 ○○○○업소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비 209백만원으로 총 17개의 하수관로 준설공사를 시행하였으며

준설공사에서 발생된 건설오니¹⁸⁸⁾ 150m³를 감사일 현재까지 ○○○공공하수처리장 내에 설치된 임시 보관장에 준설토를 장기간 보관하면서

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및 「폐기물 관리법」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은 위반사실이 있다.

187) 건설폐기물이란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2조 별표1. 건설폐기물의 종류에서 정하는 것

188) 건설오니 : 준설공사, 굴착공사, 지하구조물공사 등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폐재류를 중간처리하는 과정 또는 건설공사장 세륜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를 말함

<사천시 하수관로준설사업 준설토 현황>

구분	사업명	사업비 (천원)	준설량 (m³)	보관 준설토(m³)	준설토 처리현황	감사시 지적사항
합계	17개 사업	209,264	1,980	150	○○○하수처리장 내 준설토 임시 보관장에 보관	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 16조 및 제17 조 등 위반
2014년도	○○○종합시장 하수도 준설공사 등 7개 사업	86,990	799	61		
2015년도	○○○○○시장 하수도 준설공사 등 4개 사업	59,675	568	43		
2016년도	○○○○○시장 하수도 준설공사 등 6개 사업	62,599	613	46		

※ 준설량 1,980m³는 물과 준설토가 혼합된 양이며, 건조 후 현재 보관 중인 양은 약 150m³임

조치할 사항 사천시장은

공공하수처리장에 보관중인 하수관로 준설토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적정 처리
하시기 바라며,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설폐기물 관리에 철저를
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